

##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2005년 11월 1일 화 ~ 4일 금)

- 주최 :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 주관 :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10개 단체)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후원 :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리아포커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정책1-2>

##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방향과 과제

### - 재외동포기본법을 중심으로

권영길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1.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700만 재외동포의 시대이자 한민족 네트워크가 국익증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에 '한국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동포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한국사회에서 재외동포 관련 이슈가 유례없이 부각되고 있으나 여전히 동포들의 권익증진과 정체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비전과 체계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가령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한 국가유공자들의 후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 등지의 재외동포들은 2004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재외동포'에서 배제되어 왔음. 이에 재외동포법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들이 재외동포로 포함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중국 동포들은 실질적인 '동포'로 간주되지 못하여 불법체류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그리고 일본의 무국적 동포들은 또 다시 동포대상에서 배제되었음.
- 일제 식민통치의 비극적 역사로부터 생성된 세계 각지의 동포사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해방 60주년인 올해 들어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그간 '친북과 반공'식의 편가르기로 동포사회의 분열을 야기해 온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조치도 취해진 바 없음.
- 한마디로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음. 이는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수 십 년간 방치되다시피 한 세계각지의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역사성에 대한 한국정부의 철학과 이해가 부재하기 때문임.
- 동포문제에 대한 기본이념과 철학의 부재 뿐 아니라, 재외동포관련 정책체계도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가령,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을 담당하는 최고결정기구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경우 2003년 11월에 재외동포법 개정문제의 안건을 위한 소집을 제외하면 98년

이후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가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작년 말에야 개최. 따라서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역시 99년 이후 개최 실적이 없었음. 이는 단지 개최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동포전담부서의 실질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부족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대통령 산하의 재외동포전담기구가 중장기적인 목표와 적극적 의지를 바탕으로 동포 정책을 담당해야 한다고 재외동포사회와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2. '재외동포기본법'의 의의와 주요내용

- 이러한 재외동포정책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재외동포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반영되어 있음. 재외동포기본법의 기본 방향은 재외동포위원회의 설치에 근간한 동포정책체계를 개선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조정·집행하도록 하는 것임.
- 세계 각지에 무려 70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의 포괄적인 정의규정을 통해 재외동포를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자로 정의하여 전 동포를 차별없이 실질적으로 포괄하고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헌법정신을 구체화 함. 우리 민족의 혈통에 기반한 재외동포의 올바른 정의규정을 통해, 법적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동포들을 역사와 인권적 견지에서 동포 범주안에 포함시키고 세계 174개국의 동포들을 실질적으로 정책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임.
- 재외동포기본법에서는 오늘날 재외동포의 규모와 동포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통령 산하의 재외동포위원회 설치를 통해 독립된 동포전담기구로써 전문성과 자율성을 증진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동포정책을 펼치도록 함. 각 부처의 동포사업의 심의·조정을 통한 동포사업 효율성을 제고함.
- 현재의 재외동포 전담부처인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은 동포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의 소관부처로부터 동포업무를 승계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정부부처의 이전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금의 재외동포재단은 나름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설립될 당시 사업의 90%를 각 부처의 동포사업 이전을 가정하고 출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초기의 설립취지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재외동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인력과 사업 등을 위원회 사무처로 통합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됨.

- 재외동포기본법에서는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 수립·집행의 제도화를 위해 참정권과 합리적 병역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외동포 실태조사와 동포입장 수렴을 위한 규정을 둬.

### 3. 민주노동당의 재외동포정책 방향과 목표

- 민주노동당은 재외동포기본법을 중심축으로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임.
- 민주노동당은 재외동포들의 법적지위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근본적이고도 구체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외동포의 정책시스템과 법체계 정비를 위한 입법활동에 주력할 것임. 우리 헌법 제 2조 ②항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으나, 그간 국회와 정부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 시행하지 않아 헌법상의 의무를 도외시한 측면이 있음. 이에 지난 가을에 재외국민보호법을 발의하여 현재 법안통과를 앞두고 있는 실정임.
- 향후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여 동포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와 동시에 모국과의 연계 및 각 동포사회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동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민주노동당은 재외동포정책시스템과 법체계 정비작업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외동포사업을 추진할 것임.